

##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54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9호(2019.10.30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19년 11월 28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개정

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별표1에 별지1 기재 약제를 신설한다. 다만, 별지1에 기재된 신설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1과 같다.  
별표1의 일부를 별지2, 별지3, 별지4 및 별지5와 같이 각각 변경한다.  
별표1의 약제 중 별지6에 기재된 약제는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: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
2.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19년 12월 5일
3.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0년 7월 1일
4. 별지5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: 2022년 2월 1일

제2조(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)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0년 5월 31일 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.